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⑥,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16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㉓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계정과목별 수익금액 · 과세제외 · 비과세 명세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총수익금액(II + III + IV)	01		18. 기타영업외수익	26	
II.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III. 비과세 수익금액	35	
1. 수입이자	03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2. 수입할인료	04		IV.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3. 수수료수익	05		1. 국외사업장수익	41	
4. 배당금수익	06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부채평가익	77	
5. 보증료수익	07		3. 비용환입액	78	
6.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08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79	
7. 위탁자보수	10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80	
8. 이익분배금	11		6. 국고보조금	43	
9. 신탁보수	12		7. 보험차익	44	
10. 보험료수익[(1) - (2)]	13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1)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8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73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보험료	49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74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50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75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53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76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54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나목(③ - ④)	16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55	
③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17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56	
④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18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57	
12. 수입임대료	19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58	
13. 고정자산처분익	20		19.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금액	59	
14. 유질물처분익	23		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2호[(1) + (2)]	60	
15. 수입대여료	24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61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7호의2	8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62	
17. 기타영업외수익	25				